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국내 현황

조 성 열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무국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역사 및 각국 현황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

저작물이 창작되고 공표되면 여러 가지 매체 및 장소에서 이용되는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언제 어디서 이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저작물 이용자도 저작자의 소재를 파악해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요, 팝송, 가곡 등 음악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하기 위해서 방송사는 작사가와 작곡가, 연주가 등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번거로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특정한 기관만을 상대로 지속적인 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다.¹⁾ 그리고 저작권자도 방송사, 출판사 등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 요청을 수시로 받게 되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의 필요성에 의해 저작권신탁관리제도가 태동하게 되었고, 복제기술이 발달하여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방법이 다양화되고, 저작물 이용이 국제화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집중관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저작권제도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 최초의 집중관리단체가 설립되는데 1777년 프랑스에서 BLD(후에 연극저작물관리단체인 SACD로 변경)가 설립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프랑스의 작곡가에 의해 설립된 SACEM으로 보고 있다.²⁾ 1847년 프랑스 작곡가 브루제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갔다가 자신이 작곡한 곡이 연주되는 것을 보고 카페 주인에게 무단 연주에 대한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식비도 내지 않겠다고 제의한다. 이 사건은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최초의 집중관리단체인 SACEM이 1851년 설립된다.³⁾

학회, 2002) 74p

이후 유럽지역에서 집중관리단체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988, 198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저작권집중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저작물 이용이 국제화됨에 따라 각국의 집중관리단체가 연합해 국제저작권 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CISAC(국제 저작자·작곡가협회 총연합)과 IFRRO(국제 복제권기구연합) 등이 활동하고 있다.

각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미국

1914년 설립되어 15여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과 1939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해 3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BMI(Broadcast Music Incorporated)는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음악출판사의 복제권을 관리하는 HFA(The Harry Fox Agency, INC)는 1927년 설립되어 2만7천 개 음악출판사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문저작물의 복사권을 관리하는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 Inc)는 1978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9,600개 출판사와 175백만 여 건의 어문저작물을 관리한다.

프랑스

SACEM(Societe des Auters, Compositeurs et Editeurs de Musique)은 1851년 설립되어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며, SACD(Societe des Auteurs et Compositeurs Dramatiques)는 연극저작물을, 1837년 설립된 SDGL(Societe des Gens de Lettres de France)은 어문저작물을 관리한다.

영국

1914년 설립된 PRS(The Performing Right Society)와 1924년 설립된 MCPS(The Mechanical-Copyright Protection Society)는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1977년 설립된 ALCS(The Authors' Licensing and Collecting Society Limited)는 어문저작물을, 1983년 설립된 DACS(The 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는 시각 예술가(Visual Artist)의 미술, 사진저작물을 관리한다.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의 필요성에 의해 저작권신탁관리제도가 태동하게 되었고, 복제기술이 발달하여 저작물의 이용 형태 및 방법이 다양화되고, 저작물 이용이 국제화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집중관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저작권제도의 목적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독일

1903년 설립된 GEMA(Gesellschaft fuer musikalische Auffue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altigungsrechte)는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1958년 설립된 VG WORT는 1978년 VG WISSENSCHAFT을 통합해 어문저작물을, 1959년 설립된 GVL(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mbH)은 저작인접권을, 1969년 설립된 VG BILD-KUNST는 미술가, 그래픽디자이너 등의 미술저작물을 관리한다.

일본

1930년대 독일인 플라게가 일본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태동했고, 단체 설립에 대해 초기에는 허가제를 취했으나 2001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1939년 설립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1939년 설립된 일본문예가협회는 어문저작물을, 1965년 설립된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1991년 설립된 일본복사권센터는 어문저작물의 복사권을 관리하고 있다. 단체 설립이 등록제로 바뀐에 따라 일본 학술저작권협회 등 집중관리단체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일본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신탁은 저작재산권자(위탁자)와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자(신탁관리자)간에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특정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자에게 위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신탁관리자는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하거나 위탁자 본인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저작권집중관리 현황

저작권신탁관리와 대리중개

저작권위탁관리업 구분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 때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분야의 저작자단체가 정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저작권집중관리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신탁은 저작재산권자(위탁자)와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자(신탁관리자)간에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특정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자에게 위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신탁관리자는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하거나 위탁자 본인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조정위원회, 1992, 25p

저작권행사의 대리 또는 중개는 저작권의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저작권의 실명등록, 양도, 이용허락계약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오승종 · 이해완, 「저작권법」(오승종 · 이해완, 박영사, 1999, 44p)

허가제와 신고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에 대해 단체 설립이 자유롭고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제도를 도입해 단체 설립과 운영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78조 제1항). 즉 신탁관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대리중개업은 신고제를 취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11개 단체가 허가를 받아 저작권신탁관리를 하고 있고, 400여 개 업체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했다.

신탁관리단체는 정관과 신탁계약약관 및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국내 신탁관리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규정은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업무규정,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저작물사용료 분배규정, 저작물관리 수수료규정 등이 있다.



보고 의무 및 감독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79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승인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80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이용계약 체결 의무, 정보 공개 의무, 과징금 처분 등 신탁관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탁관리단체의 업무

• 저작물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신탁관리단체는 공표된 저작물의 2차적인 이용을 관리한다. 예를 들면 공표된 음악저작물이 방송에 2차적으로 이용되거나 공표된 어문저작물이 참고서나 선집도서에 2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다.

신탁관리단체는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와 신탁받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물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분배한다.

•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

신탁관리단체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적발하면 단체의 이름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므로 신탁관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신탁법의 적용도 받게 된다.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송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되어 타인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신탁관리단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6.7.12.판결, 96나41279호.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79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승인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관리

저작권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는 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게 된다. 신탁관리단체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데, 신탁법상 신탁관리의 대상은 재산권에 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1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

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 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1996.7.12.판결, 95-나41279호.}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

비영리사단법인 형태

국내 신탁관리단체는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탁관리단체는 사용료를 분배할 때 일정금액을 수수료를 공제해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수수료율은 대개 사용료의 10~30% 사이로 단체별로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세무서가 수수료를 공제하여 일반관리비로 충당하는 신탁관리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신탁관리단체가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 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6.6.14.판결, 95누14435호.}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어문, 연극, 영상, 사진,



미술저작물 관리), 한국방송작가협회(방송대본 관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물 관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영화 시나리오 관리)가 있다. 저작권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실연자의 저작권접권 중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관리),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반제작자의 저작권접권 중 복제권, 배포권 관리), 한국방송실연자협회(방송실연자의 저작권접권 관리)가 있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저작자, 출판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는 저작물의 문헌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교과용도서 보상금(저작권법 제23조)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도서관 보상금(저작권법 제28조)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저작권법 제65조, 제68조)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징수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공공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신탁관리)이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고 최근 한국영상산업협회(비디오와 DVD 등의 공연권 신탁관리)와 한국영화제작자협회(영화저작물의 인터넷상 이용에 대한 복제 전송권 신탁관리)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집중관리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증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매체에 저작물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MP3폰, P2P, 스트리밍서비스 등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에 등장한 DMB를 비롯해 앞으로도 새로운 멀티미디어 매체는 계속 늘어날 태세다.

멀티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집중관리단체에도 빠른 대응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저작물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립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저작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회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용자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집중관리제도는 독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인터넷 등 신매체의 저작

저작권 신진국의 집중관리제도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신탁관리단체도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 이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분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매체에 이용되는 저작물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자는 빠른 시간 내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작권자도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

정이다.

저작권 신진국의 집중관리제도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신탁관리단체도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이용허락을 하고 비회원 저작자의 저작물은 관리하지 않는다. 여러 분야의 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하는 방송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저작자의 저작물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용하기도 한다.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저작권자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하나가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한 '확대된 집중허락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ce)'이다.

연구, 「디지털 시대의 주요 외국저작권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2002년, 문화관광부, 192p)

집중관리단체가 비회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회원 저작권자는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사용료를 분배받는 제도로 주로 저작물이 대량으로 이용되는 방송이나 저작물이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 매체 및 형태가 급속히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